

1. 들어가는 말

역대 국회에서 사회적 이슈에 편승한 유사 법안 발의는 일종의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유치원 안전사고에서부터 세월호 사건, 최근 포항 지진까지 사건 발생이후 재발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이 우후죽순으로 발의되는 것이 대표적 예다. 유사 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안으로 통합되어 이른바 ‘대안반영폐기’ 법안으로 분류되어 ‘처리’되었다. 그러나 ‘폐기’라는 용어의 어감에서 보듯이 의원 개개인의 법안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최근에는 ‘폐기’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대안반영법안’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안으로 통합되어도 의원 개개인의 법안 실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사회적 이슈에 편승한 유사 법안이라 할지라도 법안의 필요성이나 효용성을 고려하면 일방적으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법안 실적 쌓기 용의 유사 법안은 경계해야 하며 사건 발생 직후 관련법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민생에 필요한 법안을 연구하고 발의하여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 허리우드에서 시작한 ‘미투(me too, 나도 피해자)’ 운동이 국내로 전파되어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문화계를 중심으로 ‘미투’ 운동이 활발히 확산하고 있다. 이에 발 빠르게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법안 발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제20대 국회에서 성폭력 내지 여성폭력에 관한 개정법률안은 80여 건에 달한다. 이 중 ‘미투’로 검색되거나 미투운동이 활발히 시작된 2월에 발의된 성폭력 관련 법안은 30여 건이다. 이러한 법안이 발의되기 이전 국회에서 유승민, 오신환, 신용현, 김관영, 이혜훈 등 바른미래당 의원 17명이 ‘서지현 검사에 대한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이와 관련된 인사발령, 해당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은폐시도의혹 및 그 외 검찰 내 성폭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제출되었다. 이후 ‘미투’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응, 즉 법률안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제출되기 시작했다(【표 1】참고). 초기 제출된 법안은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으로 주요골자는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 방지책의 체계적 추진과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교과과정 내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후 2018년 2월 23일 조정태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주요 골자는 성폭력 범죄사건에서 ‘디엔에이(DNA)증거와 같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되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같은 날 송기현 의원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골자로 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8년 2월 26일에는 오신환 의원과 김삼화 의원이 각각 1건과 3건의 성폭력 관련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신환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공소시효 특례 규정을 개정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공소시효 연장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주요 요지다. 김삼화 의원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방지를 위한 대책’과 ‘성폭력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일반 계약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다 보니 그 기간이 턱없이 짧아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2018년 2월 28일에는 손금주 의원이 1건 황주홍 의원이 7건을 각각 발의했다. 우선 손금주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담보하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권력형 성폭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권력형 성추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하려는 것' 이 주요 골자다.

황주홍 의원은 성폭력 관련 법안을 두루 정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우선 '형법일부개정안' 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하도록 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서는 ' 노사협의회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과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 '하게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해 위력에 의한 성폭력 방지, 직장내 군대 내 성폭력 처벌 강화 조치 등을 포함시켰다.

3월 2일에는 나경원 의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는데 주요 골자는 '경제·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익의 제공이나 약속 또는 불이익의 위협으로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 으로 위계에 의한 성폭력 방지 차원의 법률안이라 할 수 있다.

3월 6일, 이언주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법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각각의 주요 내용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디엔에이(DNA)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 하는 것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 하는 것이다.

3월 7일에는 김경진 의원, 백혜련 의원, 신용현 의원이 각각 관련법을 발의했다. 김경진 의원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였는데도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기존 500 만원의 과태료가 아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백혜련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하려는 ' 내용을 포함했다. 신용현 의원은 ' 성폭력법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통해 위계에 의한 성폭력 방지 및 학교, 공공기관 등 기관 내 성폭력에 관한 상담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성폭력 상담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장치를 요구했다.

3월 8일에는 유승희, 이철규, 진선미 의원이 각각 관련법을 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철규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통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상실·심신미약 형별감면 규정을 필수적으로 배제하도록 함과 동시에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진선미 의원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제외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표 1】 2018년 국회 ‘미투’ 관련 법안 발의현황 (2018.3.11.기준)

연번	법안명	대표 발의	제안일	주요 내용
1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안	정춘숙	2018. 2.21	<p>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여성폭력·살해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음. 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성별이 확인된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9%(2015년)로 여성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디지털폭력, 묻지마폭력 등 여성에 대한 각종 범죄로 여성의 51%는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p> <p>반면, 그동안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가급적 개입하지 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왔음.</p> <p>이에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규정하고,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일관성 있는 통계구축, 교과과정 내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조 등)</p>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조경태	2018. 2.23	<p>현행법은 강간, 특수강도강간 등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p> <p>공소시효는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증거가 없어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사실상의 상태를 유지·존중하기 위한 제도이나, 최근에는 과학적 수사기법의 발달로 수십 년이 지난 장기 미제사건의 경우에도</p>

연도	법안명	대표 발의	제안일	주요 내용
	안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반인륜적이고 흉악한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디엔에이(DNA)증거와 같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되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 안	송기현	2018. 2.23	최근 한 국가기관 내에서 과거에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이 은폐·축소되었다는 의혹이 이슈화되면서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단체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현행법은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사건에 대한 은폐·축소 금지 또는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은폐·축소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36조)
4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 정법률 안	오신환	2018. 2.26	최근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제10조)는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이 내려져 범죄 예방 효과도 적고, 형량기준에 따른 공소시효도 짧아지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의 경우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제외되어 있음. 최근 검찰 성폭력 사건과 문화계 성폭력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경우에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연장이 필요함.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공소시효 특례 규정을 개정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공소시효 연장 규정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21조제2항).
5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김삼화	2018. 2.26	현행법은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지침을 마련하며,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연도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 내용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그런데 이와 같은 시책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점검,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성폭력 예방교육 및 예방조치에 관련된 사항에만 중점을 두고 있고, 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의 방지를 위한 대책은 미흡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p> <p>이에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일정기간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사건 발생 후의 조치에 관한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p>
6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2018. 2.26	<p>현행법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현행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p>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일반 계약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다보니 그 기간이 턱없이 짧아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p> <p>또한 성폭력 피해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만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음</p> <p>이에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연장하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업무, 고용 기타 관계가 지속된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p>
7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2018. 2.26	<p>현행법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p> <p>하지만 해고 이외에 그 밖의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p>
8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	2018. 2.28	<p>최근 문화계·교육계·정치권 등 각 계에서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폭로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p> <p>피해자의 사회적 위치를 악용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일생을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가해자에 대해 더욱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p>

연도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 내용
	정법률안			<p>현행법은 권력형 성추행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감정에 반하는 형량으로 솜방망이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담보하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권력형 성폭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권력형 성추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신설, 안 제10조제2항).</p>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2018. 2.28	<p>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이 정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음. 힘과 권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게 서슴없이 폭력을 가하는 전근대적인 야만행위는 피해 여성들의 권리보장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근절될 수 있을 것임.</p> <p>그러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의 경우 몇 백만 원의 벌금선고가 대다수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도 벌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p> <p>이에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자 함</p>
10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2018. 2.28	<p>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이 정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음. 힘과 권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게 서슴없이 폭력을 가하는 전근대적인 야만행위는 피해 여성들의 권리보장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근절될 수 있을 것임.</p> <p>무엇보다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 신고자를 보호하며 내부고발에 대한 보호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기에 노사협의회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과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제16호 신설)</p>
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2018. 2.28	<p>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이 정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음. 힘과 권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게 서슴없이 폭력을 가하는 전근대적인 야만행위는 피해 여성들의 권리보장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근절될 수 있을 것임.</p> <p>그러나 직장 내 사업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p> <p>이에 사업주 성희롱 등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여 직장 내 사업주, 상급자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무관용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직장 내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p>

연도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 내용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1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2018. 2.28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이 정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음. 힘과 권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게 서슴없이 폭력을 가하는 전근대적인 야만행위는 피해 여성들의 권리보장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근절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의 경우 몇 백만 원의 벌금선고가 대다수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도 벌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하는 등 숨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강력하게 처벌하고자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위력에 의한 성추행은 가해자가 업무와 직접적 연관되어 피해 당시 바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하여 공소시효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및 안 제21조제4항).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2018. 2.28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이 정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음. 힘과 권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게 서슴없이 폭력을 가하는 전근대적인 야만행위는 피해 여성들의 권리보장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근절될 수 있을 것임. 특히,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등 사회적으로 악용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말할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 삭제).
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2018. 2.28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이 정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음. 힘과 권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게 서슴없이 폭력을 가하는 전근대적인 야만행위는 피해 여성들의 권리보장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근절될 수 있을 것임. 특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사회 성폭력 범죄는 무관용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처할 때 사회 전반의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고, 피해자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임. 이에, 군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어야 당연퇴직이 가능하던 것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로 개정하여 군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격히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6호의3)
1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황주홍	2018. 2.28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이 정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등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음. 힘과 권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게 서슴없이 폭력을 가하는 전근대적인 야만행위는 피해 여성들의 권리보장과

연도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 내용
	안			<p>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근절될 수 있을 것임.</p> <p>특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사회 성폭력 범죄는 무관용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처할 때 사회 전반의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고, 피해자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임.</p> <p>이에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수행한 공무원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어야 당연 퇴직이 가능하던 것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공무원의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한 성범죄에 엄격히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3).</p>
16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2018. 3.2	<p>경제·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성희롱, 성추행하는 갑질이 학계, 문화계, 종교계 등 분야를 막론하고 폭로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p> <p>경제·사회적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일반 성폭력 범죄에 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음. 우월적 경제·사회적 지위를 악용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p> <p>이에 경제·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익의 제공이나 약속 또는 불이익의 위협으로 수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p>
17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주	'18.3. 6	<p>최근 조직 혹은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에 대해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형량은 조직 내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p> <p>한편, 현행법은 강간 등 성폭력범죄에 대해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DNA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용이해진 상황에서 환경의 변화에 맞게 공소시효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p> <p>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디엔에이(DNA)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되게 하려는 것임</p>
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주	2018. 3.6	<p>최근 조직 혹은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에 대해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은 조직 내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p>

연도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 내용
				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	2018. 3. 7	<p>현행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피해근로자가 요청하였으나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p> <p>그러나 최근 직장 내 성희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p> <p>이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였는데도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기존 500만원의 과태료가 아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제1호의2·제1호의3, 제39조제2항제1호의5·제1호의6 삭제)</p>
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2018. 3. 7	<p>현행법상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공소시효를 정하지 않고 있음.</p> <p>그러나, 최근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조직 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 또한 피해자는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점이 드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p> <p>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제3호)</p>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	2018. 3. 7	<p>최근 성폭력 가해 사실을 폭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각계로 퍼져 나가면서 대학가와 초·중·고교 등 학교 현장까지 확산되고 있음.</p> <p>이는 인간이 전인적 발달을 이루고 사회적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공간인 학교 현장에서 오히려 교사와 학생이라는 권력 위계에 의해 성폭력이 만연했음이 드러난 것임.</p> <p>이에 업무, 고용뿐만 아니라 교육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안 제10조).</p>
2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현	2018. 3. 7	<p>최근 검찰, 문화예술계, 대학 등에서 미투운동의 확산으로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자체 지침 마련,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포괄적인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성폭력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보호</p>

연도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 내용
	일부개정법률안			<p>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규정은 미비 되어 있는 실정임. 특히 유명 연예인 출신 대학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성추행, 성희롱 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바 대학 내 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p> <p>이에 대학 등을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하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관 내 성폭력에 관한 상담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성폭력 상담 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5조의4 신설).</p>
2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2018. 3.8	<p>최근 권력 관계 등에서 비롯된 성폭력 피해 사실이 붓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한 고소를 통하여 여전히 역공격 위협에 노출되고 있음.</p> <p>이에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법」 제307조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제1항(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p>
24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2018. 3.8	<p>힘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여성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위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이자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는 만행이라고 할 수 있음.</p> <p>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살인 등 범죄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가해자에 비해 피해자가 쉽게 제압이 가능한 약자이기 때문인데, 대개 가해자들은 술에 취해서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범죄가 우발이 아닌 정밀하게 계산된 본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p> <p>따라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상실·심신미약 형벌감면 규정을 필수적으로 배제하도록 함과 동시에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20조).</p>
25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	2018. 3.8	<p>현행법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p> <p>또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범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p> <p>이에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p>

면역	법안명	대표 발의	제안일	주요 내용
				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38조제2항 제1호 신설).
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2018. 3. 8	영화 등 문화예술계를 필두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들의 고백(#Me Too)운동이 한국 문화예술계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 폭로 사건들이 성폭력 관련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 사건들이 많아 가해자들을 대부분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으로는 현행법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인해 성폭력을 당한 사람이 피해 내용을 폭로하면, 그 내용이 사실이라도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사실 고백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가해자들은 이를 악용함으로써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7조제1항)

*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검색일" 2018.3.11.)

3. 맺는 말

국회에서 '미투' 관련 법이 다수 발의되는 순간에도 '미투' 운동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문화계에서 한참 진행된 미투 운동은 최근 유력 정치인들이 관련되면서 국회 등 정치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향후 '미투' 운동의 향배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미투' 운동의 양상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법 발의 현상도 맥락을 같이 할 가능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투' 관련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위계에 의한 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등이다. 위계에 의한 성폭력 방지에 대한 조항 등 기존 법안의 미비사항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투' 운동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성폭력 관련 법안에서 꾸준히 보완하는 내용에 관한 유사법안의 남발은 의원 개인의 법안 실적에는 포함되겠지만 포퓰리즘 법안의 논쟁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법안 발의에 따르는 인적 물적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 이러한 유사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안반영으로 통합될 것이다.